

정보 무늬(QR코드) 이용 시, 음성으로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보도시점: 2026. 2. 26.(목) 08:30 배포: 2026. 2. 26.(목) 08:30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 포상으로 지원하고 제도로 뒷받침한다

- 국민권익위, 2025년 청렴윤리경영 유공기업으로 대화제약, 정식품, 노루홀딩스 등 3개 기업 선정
- 청렴윤리경영 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오는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관련 국정과제】 16-3.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청렴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민간 영역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기업들 가운데 ‘대화제약’, ‘정식품’, ‘노루홀딩스’ 등 3곳을 유공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부터 도입된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통해 공공·민간의 자율적인 부패 예방 역량을 강화해 왔고 특히, 2025년에는 중견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민간 영역의 반부패 노력 내실화에 주력했다.

- 먼저, ‘대화제약’은 경영진이 주도하는 CP 실천 체계를 확립하고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환류 시스템을 운영했다.

그리고 ‘정식품’은 기업 전반의 부패리스크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관련 인적·재정적 자원을 지원하여 청렴문화를 안착시켰으며,

‘노루홀딩스’는 그룹 차원의 통합적인 윤리가치 체계를 정립하고, 부패 취약분야를 점검·개선하여 청렴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 16-3번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번 유공 기업 선정과 함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입법예고 기간 : 2026. 2. 9. ~ 2026. 3. 23.

이번 개정안은 청렴윤리경영을 향한 자발적 노력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청렴윤리경영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수준에 머물렀던 기존의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내 부패예방 전담부서 설치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국민권익위의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평가 및 지원 업무 명시(안 제12조 제8호의2 신설),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포상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28조의2 신설) 등이 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민간 영역에서 청렴이 경영의 핵심 가치임을 보여준 모범 사업장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국민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 청렴윤리경영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민간협력담당관실	책임자	과장	양용석 (044-200-7161)
		담당자	사무관	우은주 (044-200-7160)

#국민권익위 #국정과제 #반부패경쟁력 #청렴윤리경영 #유공기관 #청렴
#CP #부패방지권익위법 #입법예고 #민간청렴

1. 개정이유

공공기관에 부패예방과 준법감시를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설치토록 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투명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고 세계 수준의 반부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며, 운영 지원 및 평가와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 기능과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부패예방 전담부서 지정·설치(안 제3조의2 신설)

공공기관에 사후적발·통제 중심의 감사기능과 분리하여 부패예방,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등을 전담하는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설치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 운영 등 정책 추진 근거 마련(안 제12조제8호의2 신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각급 공공기관과 기업의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 등 정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 운영 및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안 28조의2 신설)

신설된 기능 조항의 내용에 따라 실제 제도운영이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의 기준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방법과 신청 등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7층,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m_ky@korea.kr
- 팩스 : 044-200-79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전화 044 - 200 - 7164, 팩스 044 - 200 - 7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3조2(공공기관의 부패예방 전담 부서 지정 등) 공공기관은 부패예방과 준법감시를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예방과 준법감시를 위한 전담부서를 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전담부서를 둔 것으로 본다.</u>
제12조(기능) (생략) 1. ~ 8. (생략) <u><신 설></u>	제12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u>8의2. 공공기관·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자율준수와 준법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기준 마련 및 평가</u>
9. ~ 21. (생략) <u><신 설></u>	9. ~ 21. (현행과 같음) <u>제28조의2(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와 준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준과 시책을 마련하고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u> <u>② 위원회는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u>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u>내부통제 제도(이하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을 평가(이하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평가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한정한다.</u> <u>③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u> <u>④ 위원회는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 ----- 제8호,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